

2023년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정 책 관

목 차

I 취득세

지방세법

1.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7, 영§18-4) 1
2.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7, 영§10-2) 2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 명확화(§11) 27
4. 별장 취득세 종과세 대상 제외(§13, §16) 28

지방세법 시행령

1.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기준 보완(영§14) 35
2. 다주택자 취득세 종과요건 완화(영§28-2, §28-3, §28-4) 40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신설(규칙§4-3) 47
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 등 신설(규칙§4-4) 53
3.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서식(규칙§12-2) 6

II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1.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영 §39 관련 별표1) 68

Ⅲ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1. 담배 재반입시 조세행정 통일성 제고 [법 § 53, § 63] 73
2.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면제 규정 보완 [법 § 54, § 56] 77

Ⅳ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1.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 [영 § 75①5.] 83
2. 지방소비세 관련 별표 2, 3, 4, 5 개정 [영 § 75②] 86

Ⅴ 주민세

지방세법

1.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 [안 부칙 § 12] 105

지방세법 시행령·규칙

1.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영 § 79] 109
2.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 서식 개선 [칙 별지 § 37의2] 111

VI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법§ 85, § 103의37)	117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92①, §103의3①)	19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법§93⑦, §95④)	123
4.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법§93⑰)	125
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법§103의20)	128
6.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개선(법§103의32)	130
7.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법§103의65)	132
8.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법령 시행시기 조정(법§93⑱)	134
9. 지방소득세 구분 개편(법§87①)	136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개선(법§89)	138
1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141
①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계산 방식 규정(법§102의2~§102의5)	
②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마련(법§102의6, §102의7)	
③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 마련(법§102의8)	
1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정비	152
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 정비(법§103, §103의3, §103의7)	
② 기장불성실 가산세 삭제(법§103의2, §103의8)	
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법§103의13)	160
14. 국세 과세정보 공유범위 확대(법§103의59)	164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보완(영§87④)169
2.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영§90③, §92③ 등)171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영§99의2~§99의4 등) ...182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조문 정비(영§100, §100의3) ...8
5.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 마련(영§100의7)183
6. 재해손실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영§100의39 등)185

VII 재산세

지방세법

1.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조정(법 § 110①2) 221
2.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 제도 신설(법 § 110③) 224
3. 주택 재산세(별장) 종과세율 폐지(법 § 111①3) 229
4.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법 § 118의2) 231

지방세법 시행령

1.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영 § 102) 239
2.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영 § 109) .. 242
3.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영 § 110의2) 243
4.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영 § 118) ... 250

I. 취득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개정개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 § 74) 동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 (원시·승계·지목변경) 불분명 ※ 원조합원 : 청산금*을 내지 않는한 취득세 면제(성격이 유사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과세 → 형평성 문제) * 사업 종료후 취득하는 부동산평가가액 - 당초 보유한 부동산평가가액의 차이 ※ 승계조합원 : 승계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과세 ○ 청산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 재개발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면적별로 감면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과세 - (토지)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 면적기준 지목변경 과세 ○ 청산금을 내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과세하되, 1가구 1주택자는 면적별로 감면 ※ 과세·감면방식 변경으로 적용대상은 법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개정내용

※ 시행령 제18조의4, 지특법 제74조 개정내용과 함께 확인 필요

요

①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

- (건축물) 청산금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과세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면적별로 감면*

* 감면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75%, 60~85㎡이하 50% 감면(청산금이 없는 사람은 과세 전환되나, 1가구 1주택 혜택은 받을 수 있고, 청산금이 건축물 가액보다 큰 사람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봄)

- (토지) 기존처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과세제외하고,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한 면적에 한해 과세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취득으로 과세*

* 전체 공사비를 환지에정지(조합원)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세자별 과세

※ 납세의무자와 취득원인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단서 신설

②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삭제

【재개발·도시개발 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변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재개발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원조합원	건축물 및 토지 구분 없이 면제(지특법§74①)하되, 청산금은 과세	건축물 및 토지 구분 ① 건축물 : 신축(원시취득) 과세, ∴ 납세의무자 명확화(법§7⑬) ② 토지(부속토지) : 과세 제외 하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과세 ∴ 납세의무자 명확화(법§7⑬)
	승계 조합원	승계취득 가액을 제외하고 과세	③ 지목변경(도시개발사업) : 취득세 과세(환지예정지기준) ∴ 납세의무자 명확화(법§7④)

③ 재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명확화(영 §18의4)

<조합 및 사업시행자>

- 조합·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 취득세 과세 시,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의 토지 면적에서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차감을 명확화

* (체비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함

** (보류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의미. 보류지 중에서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제외한 부분, 즉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가 체비지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취득가액 공제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 E$$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조합원>

-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가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면적에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곱한 가액*을 과표로 함

*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을 공제

$$\text{가액} = (A \times B) - C$$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 면적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2023.1.1. 이전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는 사업의 조합원의 경우,
 -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함
 - ※ 조합 및 사업시행자의 경우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라 '23.1.1.부터 부과

■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중략)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정한다.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생략)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u><후단 신설></u>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u><신 설></u>	

개정 전	개정 후
	<u>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u>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u>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u> 1.·2. (생략) 3. <u>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u>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u>
$\text{공시 지가} \times \frac{\text{제11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text{공시 지가}}$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A: 해당 토지의 공급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text{가액} = A \times [B - (C \times B / D)] - E$ A: 해당 토지의 공급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text{가액} = (A \times B) - C$ A: 해당 토지의 공급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 면적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u>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u>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u><신 설></u>	

개정 전	개정 후
	<u>취득</u> <u>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u> <u>합원의 토지 취득</u>

참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과세처제 개선에 따른 서울·취득시기·과표

구 분		과세대상		취득원인 (서울)	취득시기	과세표준
재개발 사업	조합원	건축물 신축		원시취득 2.8%	신축 준공일 등	전체 공사비 등 신축비용을 조합원 취득면적별로 안분
		당초 토지 초과지분 ※ 건축물 부속토지		유상승계 취득 4%	잔금지급일	과세면적×분양가액/m ²
	조합 (시행자)	체비지· 보류지	건축물 (신축)	원시취득 2.8%	신축 준공일 등	전체 공사비 등 신축비용을 조합원 취득면적별로 안분
			건축물 부속토지	무상승계 취득 3.5%	이전고시 익일	과세면적×분양가액/m ²
도시 개발 사업	조합원	지목변경 취득세		지목변경 2.0%	조성공사 준공일	전체 공사비 등 지목변경 비용을 조합원 취득(한자) 면적별로 안분
		당초 토지 초과지분		유상승계 취득 4%	잔금지급일	과세면적×분양가액/m ²
	조합 (시행자)	지목변경 취득세		지목변경 2.0%	조성공사 준공일	전체 공사비 등 지목변경 비용을 조합원 취득면적 별로 안분
		체비지·보류지 ※ 일반분양분 토지		무상승계취득 3.5%	이전고시 익일	과세면적×분양가액/m ² ※ 지목변경 취득가액 공제

2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 (법 § 7, 영 § 10-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을 인용 □ 간주취득세 과점주주(특수관계)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①~④) 준용 ○ (§2①)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2②) 경제적 연관관계	□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법§7⑤) *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 간주취득세 과점주주(특수관계)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영§10-2 신설) ○ (§10-2①1) 종전과 같음 ○ (§10-2①2) 경제적 연관관계																						
<table><tr><th>호</th><th>내 용</th></tr><tr><td>1</td><td>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td></tr><tr><td>2</td><td>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td></tr><tr><td>3</td><td>위의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td></tr></table>	호	내 용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위의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table><tr><th>구분</th><th>내 용</th></tr><tr><td colspan="2">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주주, 유한책임사원)</td></tr><tr><td>-</td><td rowspan="2">(삭제)</td></tr><tr><td>-</td></tr></table>	구분	내 용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주주, 유한책임사원)		-	(삭제)	-							
호	내 용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위의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구분	내 용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주주, 유한책임사원)																							
-	(삭제)																						
-																							
○ (§2③)주주 등 경영지배관계 <table><tr><th>호</th><th>목</th><th>내 용</th></tr><tr><td>1</td><td>-</td><td>본인이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td></tr><tr><td rowspan="2">2</td><td>가</td><td>•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본인을 ①·②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지배하는 개인·법인</td></tr><tr><td>나</td><td>•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의 ②에 해당하는 자 및 가목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td></tr></table>	호	목	내 용	1	-	본인이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2	가	•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본인을 ①·②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지배하는 개인·법인	나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의 ②에 해당하는 자 및 가목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 (§10-2①3~5)주주 등 경영지배관계 <table><tr><th>호</th><th colspan="2">내 용</th></tr><tr><td>3</td><td>본인이 개인</td><td>•직접 지배하는 법인</td></tr><tr><td>4</td><td rowspan="2">본인이 법인</td><td>•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td></tr><tr><td>5</td><td>•법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4호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td></tr></table>	호	내 용		3	본인이 개인	•직접 지배하는 법인	4	본인이 법인	•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5	•법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4호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호	목	내 용																					
1	-	본인이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2	가	•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본인을 ①·②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지배하는 개인·법인																					
	나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의 ②에 해당하는 자 및 가목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호	내 용																						
3	본인이 개인	•직접 지배하는 법인																					
4	본인이 법인	•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5		•법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4호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 (§2④) 지배적 영향력 - 출자지분 50% 이상 출자 -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	○ (§10-2②) 지배적 영향력 - 출자지분 50% 이상 출자 - 삭 제																						

□ **개정내용**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령§10-2, §11 개정내용과 함께 확인 필요

<지방세법 개정>

-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 제 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법 §7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 있는 자 등에 대해 명확화

① **경제적 연관관계 명확화**(영 §10-2①2)

개정 전	개정 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임원과 사용인(주주·유한책임사원인 경우로 한정)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삭 제

② **경영지배관계 범위 구체화**(영 §10-2①)

개정 전	개정 후
본인 이 개인 ·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의 친족관계·경제적 연관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	(3호)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본인 이 법인 ⑦ · 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 본인을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개인법인	(4호) 본인을 직접 지배하는 개인·법인
·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 하는 자 및 ⑦의 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	(5호)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법인 또는 4호의 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

③ **경영지배관계의 의미 명확화**(§10-2②)

○ (개정 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 지배”와 “**사실상 지배**”(임면권의 행사, 경영방침의 결정)로 구분

⇒ (개정 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④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 다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출자·출연 비율이 각각 “50%”인 경우로 한정

□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3조(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 ----- 「지 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①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u>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u> <u>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u> <u>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주주</u> <u>나 유한책임사원</u>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법인 중 해당 개인·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

개정 전	개정 후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u>과점주</u>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u>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0조의 2에 따른 과점주주</u>-----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법 §1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 규정 부존재 ☐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 개정내용

- 합병·분할에 대해 무상(3.5%), 유상(4%)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이 유권해석과 예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

<개정 반영 시 합병·분할 세율 및 실무담율 비교>

(단위 :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세율	특례*	실세율	감면율	실부담율	적용 세율	실부담율
		(a)	(b)	(c)=(a)-(b)	(d)	(e)=(c)×(d)	(a')	((a')-(b))×(1-(d))
합병	적격	(무) 3.5	2	1.5	50	0.75	(유) 4	1(0.25↑)
	비적격	(무) 3.5	-	3.5	-	3.5	(유) 4	4(0.5↑)
분할	인적	적격	(무) 3.5	-	3.5	75	(유) 4	1(0.125↑)
		비적격	(유) 4	-	4	-	(유) 4	4
	물적	적격	(유) 4	-	4	75	(유) 4	1
		비적격	(유) 4	-	4	-	(유) 4	4

* 적격합병의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차감(법§15①3)

□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u>

4 별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법 § 13, § 16)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별장 취득세 중과세 ☐ 중과세율 적용 (일반 취득세율에 8%p 가산)	☐ 별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 ☐ 일반 취득세율 적용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으로 해당하는 경우 추징 규정 제외

☐ 개정내용

- 별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율 적용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 취득세 추징 규정 제외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u>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 5. (생략) ⑥ ~ ⑧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3. 제13조제5항에 따른 <u>별장</u>, <u>골프장</u>, <u>고급주택</u> 또는 <u>고급오락장</u> ② <u>고급주택</u>, <u>별장</u>, <u>골프장</u> 또는 <u>고급오락장</u>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u>고급주택</u> 또는 <u>고급오락장</u>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 ⑥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세율 적용)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골프장</u> ----- - ② <u>고급주택</u>-----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1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기준 보완(영 § 14)

1 개정개요

※ '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개편 관련

개정 전	개정 후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적용기준 ☐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 등 우선순위 모호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적용기준 보완 ☐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공매가액,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순서로 적용

□ 개정내용

○ 증여 취득 시, 시가인정액 적용 순서

- ① 취득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② 취득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 위 ①, ②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일 전 2년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및 적용순서】

1.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 무상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점과 비교

2. '유사 부동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 해당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날에 유사 부동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을 우선으로 적용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⑦ (생 략)	----- ----- ----- ----- ----- --- 제3항-----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영 § 28-2, 28-3, 28-4)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중과제외 대상 사원임대용 주택 ☐ 공동주택 한정 ☐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적용 ☐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 주택 수 포함 ☐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배우자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중과제외 사원임대용 주택 개선(§28-2 12호) ☐ 다가구주택 추가 ☐ 동거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개선(§28-3②2호) ☐ 부모 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별도세대 인정 ☐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 수 산정 개선(§28-4⑤5호) ☐ 토지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개선(§28-4⑤6호) ☐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우자의 주택 수는 미포함

□ 개정내용

-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초 및 주택시장 침체 등을 감안하여 중과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 요건을 합리적 개선

①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원 임대주택 중과 제외대상 확대

- (개정 전) 법인이 사원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 제외하나,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 3층·바닥면적 660㎡·동별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됨

·(사례) 지방에 공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12%가 적용됨

⇒ (개정 후) 다가구주택을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②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주택 수 산정 시 별도 세대 범위 확대

- (개정 전)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를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되나,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규정이 없음

·(사례) 조실 부모한 A는 조부모를 봉양코자 합가 후 평수가 큰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 다주택자로 과세

⇒ (개정 후)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

③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시 주택 수 제외

- (개정 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도 전체 주택가격이 1억원 초과면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

·(사례)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A는 해당 부속토지 가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주택가액이 1억원을 초과해 A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됨

⇒ (개정 후)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

※ 현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

④ 혼인으로 합가 시 주택 수 산정 개선

- (개정 전) 혼인 전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주택을 보유 중인 자와 혼인 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 적용

·(사례) A는 혼인전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와 혼인한 후에 기존 보유한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했는데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됨

- ⇒ (개정 후)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우자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본인이 보유한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과세)

□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11. (생략)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12. ----- ----- -----

개정 전	개정 후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u>공동주택</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13. ~ 15. (생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생략) 2. <u>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u> 3. 4. (생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 -- <u>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u> --- -----. 가. ~ 다. (현행과 같음) 13. ~ 15.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u> 3. 4.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신설 (규칙 § 4-3 신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 (신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①) ☐ 감정평가법인 등
☐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 (신설)	☐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②,③)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심의결과에 대한 기한 규정
☐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유사 부동산의 판단기준 ☐ (신설)	☐ 유사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로 구분(④) ☐ (공동주택)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5% 이내 조건 모두 충족 ☐ (공동주택 외)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5% 이내 조건 모두 충족

□ 개정내용

- '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에 따른 시가인정액에 대한 평가 기준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경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명시(제1항)

- 시가인정액 적용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요청, 결과 통지에 대한 기한 규정(제2항, 제3항)
 - 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을 시가인정액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② 평가기간이 지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 등 가액을 시가인정액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 해당 매매 등 가액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
-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판단기준(제4항)
 - (공동주택) 산정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산정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5% 이내의 조건을 모두 충족
 - (공동주택 외) 산정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5% 이내 조건 모두 충족

□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u> <u>②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u> <u>1.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평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법 제20</u>

개정 전	개정 후
	<u>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u> <u>2. 평가기간이 지난 후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u> <u>③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u> <u>1.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u> <u>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u> <u>④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u>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u>

개정 전	개정 후
	<u>를」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u> <u>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u> <u>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u> <u>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u>

개정 전	개정 후
	<u>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u> <u>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등</u> <u>가.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u> <u>· 위치 ·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u> <u>나. 산정대상 부동산등과의 시가표준액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 등 신설(규칙 4-4 신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간 ☐ (신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유형별 지정기간 설정 ☐ 고의·중대한 과실 : 1년 ☐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비율에 따라 6월~1년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 게재 ☐ (신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체없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

2 개정내용

- '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지자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별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설정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
 -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70%~80% 6월, 60%~70% 9월, 60% 미만 1년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체없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

3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①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u> <u>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u> <u>가. 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u> <u>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u> <u>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경우</u> <u>2.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u>

<u>제4조의3</u> · <u>제4조의4</u> (생략)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다음 각 목의 수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u> <u>가.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개월</u> <u>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9개월</u> <u>다.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년</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해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4조의5</u> · <u>제4조의6</u> (현행 제4조의3 및 제4조의4와 같음)
---	--

3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서식(규칙 § 12-2 신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서식 ○(신설)	☐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서식 마련 ○ 수증자, 과세대상(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등), 증여재산가액, 평가액 등 ※ 별지 제7호의3 서식

☐ 개정내용

- '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국세청의 증여세 관련 부동산의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서식) 마련
 - 수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대상(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등),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평가액 등
- ※ 별지 제7호의3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 납부 및 징수 통보서

(단위: 원)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Ⅱ. 등록면허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1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 § 39 관련 별표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에 대해 과세 ☐ 과세대상 : 총 956개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 제5종으로 구분	☐ 근거 법령 제·개정 사항 등 반영 ☐ 과세대상 : 총 960개 - 신설 4개, 개정 36개

☐ 개정내용

- 단일종으로 규정된 면허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별 세분화
 - * (종전)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은 제1종으로 규정
→ (개정) 종합여행업(제1종), 국내외여행업(제2종), 국내여행업(제3종) 분류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 「행정사법」 개정('20.6.9.)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 인가' 등
- 행정청의 행위 명확화 등 기존 과세대상 정비
 - * 예. (종전)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 (개정)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신고

☐ 적용요령

- 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영 별표1)

○ 신설(4개) : 제2종(1), 제3종(2), 제4종(1)

면허명	면허구분	면허종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종	호			
여행업 (「관광진흥법」)	등록	2	204	신설	<u>「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외여행업의 등록</u>	세분화
여행업 (「관광진흥법」)	등록	3	271	신설	<u>「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u>	세분화
행정사법인 설립 (「행정사법」)	인가	3	272	신설	<u>「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u>	법 개정 (‘20.6.9.)
형식승인대행기관 (「기상관측표준화법」)	지정	4	211	신설	<u>「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u>	법 개정 (‘18.4.17.)

○ 종별 정정(행위 및 업종 추가, 명칭 변경)

- 36개 : 제1종(6), 제2종(9), 제3종(11), 제4종(8), 제5종(2)

면허명	면허구분	면허종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종	호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약사법」)	신고	1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 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 조업 허가 (생략)	-----	행정청 행위 정비
		2	33		-----	
		3	34		-----	
		4	33		-- 신고, (생략)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방안시설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신고	1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및 사설방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생략)	----- 사설묘지의 -----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행정청 행위 정비
		2	52		-----	
		3	53		-----	
		4	52		-----신고, (생략)	
어업 (「수산업법」)	면허 허가 신고	1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생략)	-----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 -----	법 개정 (‘22.1.11.) ※’23.1.12. 시행
		2	53		----- (생략)	
		3	54		-----	
		4	53		-----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1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 기충격기 또는 석공의 제 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생략)	-----	용어 정비
		3	59		-----전 자충격기 ----- (생략)	
여행업 (「관광진흥법」)	등록	1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의 등록	세분화
1종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수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허가	1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	----- -----에 따른 1종화 학물질의 제조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화 학물질의 수출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1종화 학물질의 수입허가	행정청 행위 정비
식품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신고	2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생략)	-----	용어 정비
		3	3		-----즉석 판매제조 -----	
		4	3		----- (생략)	

면허명	면허구분	면허종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종	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위생법」)	신고	2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생략)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생략)	용어 정비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허가	2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용어 정비
과학관의 설립·운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록	2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과학관의 설립·운영 등록	행정청 행위 정비
굴착행위 (「지하수법」)	신고	2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단서 추가>	굴착행위(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의 신고.	면허의 특성* 반영 * 재해·전쟁 등 시급성 요구도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정	2	1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제46조	법 개정 (21.11.3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의료법」)	신고	3	27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제33조	근거 조항 정비
여행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여행·여행법」)	허가 신고	3	156	「여행·여행법」 제38조에 따른 여행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여행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	행정청 행위 정비
유해물질제조·사용 (「산업안전보건법」)	허가	3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의 허가	유해·위험물질	용어 정비
지정검사기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정	3	20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용어 정비
시험검사기관	지정	3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근거

면허명	면허구분	면허종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종	호			
(「시험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법령 명확화
자동차경매장 (「자동차관리법」)	승인	4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 ----- <u>개설</u> 승인	행정청 행위 정비
축산물 운반·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신고	4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 판매업 신고	----- ----- <u>축산물운반업·</u> <u>축산물판매업의 신고</u>	용어 정비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신고	4	2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u>체육시설업·인공암벽</u> <u>장업 신고 중 야구장업·</u> <u>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u> <u>교습업 신고.</u>	----- ----- ----- <u>체육시설업 신고 중</u> <u>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u> <u>시설업·체육교습업·인</u> <u>공암벽장업 신고</u>	용어 정비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관리법」)	신고	5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u>수출입식물방제업의</u> 신고	----- ----- <u>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u> <u>항공방제업</u> -----	법 개정 (‘21.6.15.)
중개사무소의 개설 (「공인중개사법」, 舊「부동산중개업법」)	등록	5	9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삭제> 종전의 「부동산중 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	타 면허* 구분 * 제4중제1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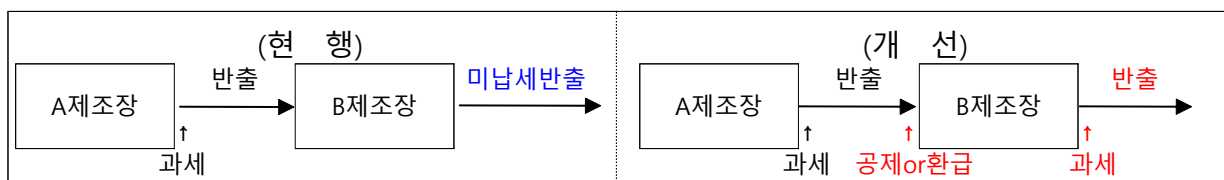
Ⅲ. 담배소비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미납세 반출 ○ 수출 등 과세면제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허용 - (1호-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미납세 반출 ○ (좌 동) - (1호-다) < 삭 제 > - (2항) <신설> 반입된 담배가 재반출하는 경우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타법과 일치)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는 경우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좌 동) - (3항) <신설> 반입된 담배가 재반출하는 경우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규정보완)

□ 개정내용



- 해당 미납세반출 사유를 삭제하여 타법상의 미납세반출 제도와 통일성을 기하는 동시에,

-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규정을 개정하여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된 경우 세액을 공제·환급하고, 재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다시 성립함을 규정

* 유사법령의 미납세반출된 물품의 재반출 시 납세의무 성립 규정

< 미납세반출 관련 타 법 사례 >

법령	조문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주세법」은 「개별소비세법」과 유사하게 규정

□ 적용요령

- 개정안 시행일 이후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3조(미납세 반출) ① ----- ----- ----- -----.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1.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u>	<삭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단서 신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 ----- ----- --.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	개정 후
1. ~ 4. (생략) ②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u>

2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면제 규정 보완 (법 § 54, § 56)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담배를 다음의 용도에 제공 하는 경우 - (6호)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 (좌 동) - (6호) 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 반출로 보는 경우 ○ (생 략) -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 반출로 보는 경우 ○ (좌 동) - <단서신설> 다만, 제54조제1항 제6호(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개정내용

- (개정방향) 담배의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연구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성능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
 - 동일 제조장 내에서 수행되는 담배의 품질·성능검사*의 경우 반출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하여 현재와 같은 과세 면제 효과가 유지되도록 함
- * 동일한 공장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샘플채취 검사
- ⇒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성능검사 등 과세면제와 관련된 사례를 구체화하고, 과세면제 규정의 각 호별 상황에 맞게 용어 정비

□ 적용요령

- 개정안 시행일 이후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시험분석 또는 연구용</u>	6. <u>담배의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 ----- ----- -----.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u><단서 신설></u>	1. ----- ----- <u>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IV. 지방소비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1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 [영 § 75①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안분기준) 재정자주도 개념 불명확 ☐ 어떤 기준*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불명확 * 재정자주도는 당초예산, 최종예산, 결산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산출·활용	☐ (안분기준) 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 ☐ 전전년도* 세입결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 * 결산 작성시점(익년 5월31일까지 의회제출) 및 안분기준 산정시점(전년 12월) 감안

□ 개정내용

- 지방소비세 기초분(4.3%p 잔여분 중 40%) 안분 시 재정자주도 활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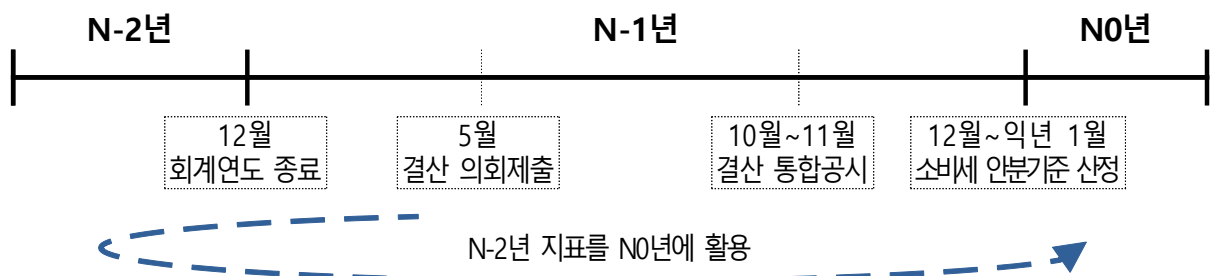
* 시도 내 관할 시군구 간 인구(50%), 역재정자주도(50%)를 기준으로 배분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4.3%p 안분기준(22.1.1. 시행) >

㉠ 전환사업 보전분(2.3조/정액)		㉡ 재정조정분		㉢ 잔여분	
㉡시·도 (약1.9조)	㉡시·군·구 (약0.4조)	㉡시·군·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교육전출금)	㉡시·도(60%) 소비지수x가중치(1:2:3)	㉡시·군·구(40%) 인구·재정자주도

- 자치단체의 정확한 재정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세입결산 기준의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결산 작성시점(익년 5월31일까지 의회제출, 통상 10월 중 통합공시) 및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산정시점(전년 12월~)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기준 활용



< 재정자주도 기준 간 비교 >

구분	당초예산 기준	최종예산 기준	결산 기준
산출시점	당초예산 의결시, 당해 4월 작업	회계연도 종료후, 익년 4월 작업	결산 의결시, 익년 10월 작업
소비세 안분기준 산정시(전년 12월) 활용가능 지표	전년 지표	전전년 지표	전전년 지표

☐ **적용요령**

- 개정규정은 2023. 1. 1.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A: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B: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text{재정자주도}(\%) = \frac{A + B}{C} \times 100$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결산 규모
6. (생략) ② ~ ⑧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2

지방소비세 관련 별표 2, 3, 4, 5 개정 [영 § 75②]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3, 4, 5 ☐ '22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3, 4, 5 ☐ '23년 기준으로 전체 금액 현행화

2 개정 내용

-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① 전환사업 보전, ② 기초단체·교육청 재정조정, ③ 잔여분으로 구분하여 안분 중

* 총 14.3%p (1단계 10%p('19.'20년) + 2단계 4.3%p('22.'23년))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10%p 안분기준('20.1.1. 시행) >

A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B 재정조정분		C 잔여분
㉗ 시·도 (약2.8조)	㉘ 시·군·구 (약0.8조)	㉗ 시·군·구 (조정교부금)	㉘ 교육청 (교육전출금)	㉙ 시도 소비지수x가중치(1:2:3)
		【별표 2】	【별표 3】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4.3%p 안분기준('22.1.1. 시행) >

A 전환사업 보전분(2.3조/정액)		B 재정조정분		C 잔여분	
㉗ 시·도 (약1.9조)	㉘ 시·군·구 (약0.4조)	㉗ 시·군·구 (조정교부금)	㉘ 교육청 (교육전출금)	㉙ 시·도(60%) 소비지수x가중치(1:2:3)	㉚ 시·군·구(40%) 인구·재정자주도
		【별표 4】	【별표 5】		

※ 재정조정분 취지 및 산정방식

- 전환사업 보전분이 온전히 이양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은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산정 모수에서 제외됨(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위와 같은 조치가 기초단체 및 교육청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별도로 보전
 -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액 총액이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었을 상황을 가정하여 기초단체 및 교육청에 배분되었어야 할 금액을 산정

- $\frac{\text{시군인구} \times \text{징수실적} \times \text{재정력지수}}{\text{자치구}}$ 재정부족액 등을 '23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별표 금액 재산정

□ 적용요령

-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개정안

[별표 2]

각 시·군·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군·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군·구별 안분액

총액	815,572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81,83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480
중구	328
용산구	1,722
성동구	2,729
광진구	3,345
동대문구	4,24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마포구	2,544
양천구	3,665
강서구	4,559
구로구	4,348
금천구	3,189
영등포구	2,205

중랑구	4,544
성북구	5,180
강북구	4,692
도봉구	4,541
노원구	6,083
은평구	5,080
서대문구	3,536

동작구	3,559
관악구	5,021
서초구	161
강남구	0
송파구	1,287
강동구	3,791

□ 부산광역시 (계: 49,90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15
서구	3,213
동구	2,677
영도구	3,503
부산진구	3,293
동래구	2,884
남구	3,260
북구	4,44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해운대구	2,027
사하구	4,674
금정구	3,570
강서구	2,246
연제구	3,089
수영구	3,007
사상구	2,953
기장군	2,950

□ 대구광역시 (계: 37,44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822
동구	5,254
서구	5,016
남구	5,51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5,667
수성구	3,304
달서구	5,465
달성군	4,404

□ 인천광역시 (계: 17,02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321
동구	1,879
미추홀구	2,969
연수구	1,469
남동구	2,78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부평구	3,089
계양구	2,468
서구	1,352
강화군	443
옹진군	251

□ 광주광역시 (계: 22,12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343
서구	3,978
남구	4,17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5,978
광산구	4,650

□ 대전광역시 (계: 21,60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328
중구	4,982
서구	4,95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유성구	2,098
대덕구	4,245

□ 울산광역시 (계: 17,52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218
남구	3,290
동구	3,14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3,003
울주군	3,871

□ 경기도 (계: 162,17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9,470
성남시	7,954
의정부시	5,397
안양시	5,333
부천시	7,233
광명시	4,046
평택시	6,868
동두천시	3,358
안산시	6,532
고양시	9,845
과천시	2,141
구리시	3,017
남양주시	7,287
오산시	3,673
시흥시	5,390
군포시	3,53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의왕시	2,308
하남시	3,651
용인시	8,098
파주시	7,137
이천시	2,377
안성시	4,288
김포시	5,173
화성시	7,892
광주시	4,924
양주시	4,907
포천시	4,500
여주시	4,602
연천군	3,500
가평군	3,481
양평군	4,263

□ 강원도 (계: 35,41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5,193
원주시	6,565
강릉시	3,794
동해시	1,781
태백시	1,123
속초시	1,945
삼척시	1,611
홍천군	1,726
횡성군	1,47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영월군	1,208
평창군	1,368
정선군	1,092
철원군	1,313
화천군	977
양구군	910
인제군	1,107
고성군	1,138
양양군	1,086

□ 충청북도 (계: 49,76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9,144
충주시	5,702
제천시	4,216
보은군	2,197
옥천군	2,566
영동군	2,496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증평군	1,901
진천군	3,240
괴산군	2,387
음성군	3,872
단양군	2,048

□ 충청남도 (계: 59,43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3,666
공주시	3,292
보령시	3,222
아산시	7,747
서산시	4,336
논산시	3,374
계룡시	1,975
당진시	4,60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금산군	2,019
부여군	2,463
서천군	2,250
청양군	1,945
홍성군	3,103
예산군	2,788
태안군	2,648

□ 전라북도 (계: 50,78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3,497
군산시	6,550
익산시	6,282
정읍시	3,109
남원시	2,656
김제시	2,758
완주군	3,29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진안군	1,654
무주군	1,590
장수군	1,523
임실군	1,652
순창군	1,614
고창군	2,303
부안군	2,306

□ 전라남도 (계: 39,85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471
여수시	4,716
순천시	3,941
나주시	2,861
광양시	3,440
담양군	1,289
곡성군	937
구례군	902
고흥군	1,409
보성군	1,091
화순군	1,55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장흥군	1,054
강진군	1,025
해남군	1,711
영암군	1,380
무안군	1,818
함평군	1,194
영광군	1,322
장성군	1,092
완도군	1,207
진도군	956
신안군	1,487

□ 경상북도 (계: 67,42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825
경주시	5,858
김천시	3,435
안동시	3,563
구미시	7,644
영주시	2,621
영천시	2,754
상주시	2,582
문경시	2,165
경산시	5,405
군위군	1,370
의성군	1,812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송군	1,350
영양군	1,214
영덕군	1,537
청도군	1,692
고령군	1,472
성주군	1,699
칠곡군	2,942
예천군	1,853
봉화군	1,460
울진군	2,171
울릉군	1,000

□ 경상남도 (계: 103,25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3,894
진주시	8,633
통영시	4,130
사천시	3,924
김해시	13,971
밀양시	4,172
거제시	6,815
양산시	8,901
의령군	2,45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함안군	3,366
창녕군	3,067
고성군	2,922
남해군	2,788
하동군	2,860
산청군	2,674
함양군	2,612
거창군	3,191
합천군	2,881

[별표 3]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139,701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6,209	강원도	4,722
부산광역시	10,355	충청북도	4,762
대구광역시	7,412	충청남도	6,444
인천광역시	4,211	전라북도	5,320
광주광역시	4,628	전라남도	5,314
대전광역시	4,697	경상북도	7,875
울산광역시	3,606	경상남도	10,186
세종특별자치시	1,080	제주특별자치도	2,893
경기도	19,987		

[별표 4]

각 시·군·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군·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로 본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군·구별 안분액

총액	572,467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55,87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010
중구	224
용산구	1,176
성동구	1,863
광진구	2,284
동대문구	2,897
중랑구	3,102
성북구	3,536
강북구	3,204
도봉구	3,100
노원구	4,153
은평구	3,469
서대문구	2,41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마포구	1,737
양천구	2,503
강서구	3,112
구로구	2,968
금천구	2,177
영등포구	1,506
동작구	2,430
관악구	3,428
서초구	110
강남구	0
송파구	879
강동구	2,588

□ 부산광역시 (계: 34,03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309
서구	2,231
동구	1,902
영도구	2,455
부산진구	2,462
동래구	1,983
남구	2,443
북구	3,14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해운대구	1,732
사하구	2,958
금정구	2,509
강서구	988
연제구	2,217
수영구	1,742
사상구	1,994
기장군	1,965

□ 대구광역시 (계: 25,56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927
동구	3,587
서구	3,425
남구	3,765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3,869
수성구	2,256
달서구	3,731
달성군	3,007

□ 인천광역시 (계: 11,62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9
동구	1,283
미추홀구	2,027
연수구	1,003
남동구	1,90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부평구	2,109
계양구	1,685
서구	923
강화군	302
옹진군	172

□ 광주광역시 (계: 15,10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2,282
서구	2,716
남구	2,85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4,082
광산구	3,175

□ 대전광역시 (계: 14,75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638
중구	3,401
서구	3,381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유성구	1,432
대덕구	2,899

□ 울산광역시 (계: 11,96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880
남구	2,246
동구	2,14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북구	2,050
울주군	2,643

□ 세종특별자치시 (계: 5,531백만원)

□ 경기도 (계: 110,20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6,435
성남시	5,405
의정부시	3,667
안양시	3,624
부천시	4,915
광명시	2,750
평택시	4,667
동두천시	2,282
안산시	4,439
고양시	6,690
과천시	1,455
구리시	2,050
남양주시	4,951
오산시	2,496
시흥시	3,662
군포시	2,400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의왕시	1,568
하남시	2,481
용인시	5,502
파주시	4,850
이천시	1,616
안성시	2,914
김포시	3,515
화성시	3,335
광주시	3,127
양주시	5,363
포천시	3,346
여주시	2,378
연천군	3,058
가평군	2,365
양평군	2,896

□ 강원도 (계: 24,17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3,546
원주시	4,482
강릉시	2,590
동해시	1,216
태백시	767
속초시	1,328
삼척시	1,100
홍천군	1,178
횡성군	1,00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영월군	825
평창군	934
정선군	745
철원군	897
화천군	667
양구군	622
인제군	756
고성군	777
양양군	741

□ 충청북도 (계: 33,98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3,070
충주시	3,893
제천시	2,879
보은군	1,500
옥천군	1,752
영동군	1,704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증평군	1,298
진천군	2,212
괴산군	1,630
음성군	2,644
단양군	1,398

□ 충청남도 (계: 40,57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9,330
공주시	2,247
보령시	2,200
아산시	5,289
서산시	2,960
논산시	2,304
계룡시	1,348
당진시	3,143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금산군	1,379
부여군	1,682
서천군	1,536
청양군	1,328
홍성군	2,118
예산군	1,904
태안군	1,808

□ 전라북도 (계: 34,67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9,215
군산시	4,472
익산시	4,289
정읍시	2,123
남원시	1,813
김제시	1,883
완주군	2,24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진안군	1,129
무주군	1,085
장수군	1,040
임실군	1,128
순창군	1,102
고창군	1,573
부안군	1,575

□ 전라남도 (계: 27,2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2,370
여수시	3,220
순천시	2,691
나주시	1,953
광양시	2,349
담양군	880
곡성군	639
구례군	616
고흥군	962
보성군	745
화순군	1,059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장흥군	719
강진군	700
해남군	1,168
영암군	942
무안군	1,241
함평군	815
영광군	903
장성군	746
완도군	824
진도군	653
신안군	1,015

□ 경상북도 (계: 46,03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6,708
경주시	4,000
김천시	2,345
안동시	2,433
구미시	5,219
영주시	1,790
영천시	1,880
상주시	1,763
문경시	1,478
경산시	3,690
군위군	936
의성군	1,237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송군	922
영양군	829
영덕군	1,049
청도군	1,155
고령군	1,005
성주군	1,160
칠곡군	2,008
예천군	1,265
봉화군	997
울진군	1,482
울릉군	683

□ 경상남도 (계: 70,50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16,313
진주시	5,894
통영시	2,820
사천시	2,679
김해시	9,539
밀양시	2,849
거제시	4,653
양산시	6,077
의령군	1,678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함안군	2,298
창녕군	2,094
고성군	1,995
남해군	1,903
하동군	1,953
산청군	1,826
함양군	1,784
거창군	2,178
합천군	1,967

□ 제주특별자치도 (계: 10,664백만원)

[별표 5]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95,381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24,722	강원도	3,224
부산광역시	7,070	충청북도	3,251
대구광역시	5,060	충청남도	4,400
인천광역시	2,875	전라북도	3,632
광주광역시	3,160	전라남도	3,628
대전광역시	3,207	경상북도	5,377
울산광역시	2,462	경상남도	6,955
세종특별자치시	737	제주특별자치도	1,975
경기도	13,646		

V. 주민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 (안 부칙 §1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면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면제) 연장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개정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가산세 특례 연장(~'24년)

적용요령

- 가산세 면제기간을 연장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2022년 12월 31일까지</u>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1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영§79)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 적용	☐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분 과세

☐ 적용요령

- ☐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u>4천800만원</u>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 ----- ----- ----- ----- <u>8천만원</u>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u>4천800만원</u>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 ----- ----- ----- <u>8천만원</u> ----- ----- ----- ----- -----.

2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 서식 개선 (칙 별지 §37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 서식 ☐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민 번호, 세액 등 포함	☐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 서식 개선 ☐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항목 삭제

☐ 개정내용

-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항목(법인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삭제) 정비

☐ 적용요령

-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개정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

[illegible]

※ 비고란은 먼저 또는 비과세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m²)]

Ⅵ. 지방소득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 (법§85, §103의37)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u>완전</u>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연결법인세액 납부 ☐ (연결모법인)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 (연결자법인)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u><신 설></u>	☐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u>90% 이상</u>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연결법인세액 납부 <좌 동> <좌 동> -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 소득세 상당액이 음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 개정 내용

-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100% → 90%) 및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식* 보완

*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이 지급

□ 적용 요령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부칙 제6조)

개정 조문

[illegible]

2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92①, §103의3①)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1,400만원 ~ 5천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5천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개정 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세와 같은 폭으로 상향 조정
(1,200만 / 4,600만 / 8,800만 → 1,400만 / 5,000만 / 8,80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의 10% 수준의 세율을 적용(소득세 : 6 ~ 45% / 개인지방소득세 : 0.6 ~ 4.5%)

- 기본세율에 1%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변경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맞추어 조정

□ 적용 요령

-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부칙 제2조 단서)

* (사례) '23.1월 이후 자산양도 시의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정규정 적용 대상
→ '23.1 ~ 2월 중 신고납부 한 경우 직권경정을 통해 차액 환급 필요

- 다만, '23.1.1.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경과조치, 부칙 제1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 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92조(세율) ①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6</td></tr> <tr> <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td>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td></tr> <tr> <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td></tr> <tr> <td>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천분의 40)</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td></tr> <tr> <td>10억원 초과</td><td>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1천4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6</td></tr> <tr> <td>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td><td>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td></tr> <tr> <td>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td></tr> <tr> <td>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td></tr> <tr> <td>10억원 초과</td><td>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 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제103조의3(세율) ① ----- ----- ----- ----- ----- -----.																																				

개정 전	개정 후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 7. 삭제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1. ~ 3. (현행과 같음) 8. ----- ----- -----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6</td></tr> <tr> <td>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td><td>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r> <td>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td></tr> <tr> <td>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천4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6</td></tr> <tr> <td>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td><td>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r> <td>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td><td>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td></tr> <tr> <td>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9. ----- ----- -----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천2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6</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천4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6</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개정 전		개정 후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법§93⑦, §95④)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2개월 이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포함)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같은 분할납부 도입,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분할납부 금액은 국세(1천만원)의 10% 수준으로 설정(1백만원)하고, 분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설정
 -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보다 납부기한이 길어 분납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과세이연효과 발생(양도+2개월, 법인+1개월)

< 국세(소득세·법인세) 분할납부 제도 >

세목	내용	분할납부 금액		관련 규정
소득세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중간예납,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종합·퇴직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기준	분납금액	「소득세법」 제77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예정신고, 확정신고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금액	「소득세법」 제112조
법인세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2천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	「법인세법」 제64조

□ 적용 요령

- '23.1.1.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 제외), 종합·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 제외)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7조)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⑥ (생략)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

4 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법§93⑰)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연금계좌 이용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0.3~0.5%)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연금계좌 이용 연금 수령시 과세방법 ☐ (좌 동)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 개정 내용

-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5%)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신설

□ 적용 요령

-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부칙 제2조 단서)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 -----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 ----- ----- ----- ----- ----- ----- ----- ----- -----.
⑧ ~ ⑯ (생략)	⑧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⑰ (생 략)	<u>득세 결정세액</u> 2. <u>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u>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u>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u> ⑱ (현행 제17항과 같음)
----------------	--

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법§103의20)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과표구간별 0.1% 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2%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2%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개정 내용

-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각 1%p)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구간별 각 0.1%p)

□ 적용 요령

-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부칙 제2조 단서)되나,
 - '23.1.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경과조치, 부칙 제14조)
- ※ (사례) '22.4.1.부터 '23.3.31.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는 법인의 '22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1 ~ 2.5%)을 적용하여 계산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 ----- -----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 <신 설>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좌 동) - <u>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u> * 부동산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비사업용 토지(「지방세법」 §103의3⑤) : 기본세율+1%p, 단, 2년미만 보유시 Max(기본세율+10%p, 4%·5%)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의 1~4%를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지방세법」 §103의31①)

□ 개정 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 자산양도소득*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
 - * 주식, 토지·건물, 회원권 등
- 양도소득에 관한 중과세 특례(「지방세법」 §103의3⑤)의 적용을 받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해당 소득의 일부를 추가납부, 「지방세법」 §103의31①)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적용 요령

- 국세와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 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 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 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 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생략)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재해 발생 시 별도규정 없음 <u><신 설></u>	☐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 <u>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u> <u>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u> <u>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u> <u>일부를 차감</u>

□ 개정 내용

- 재해 등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인세법」에 따라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차감
 - 자산상실비율(「법인세법」 제58조)을 반영한 차감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

차감 계산식 : 법인지방소득세액 - 차감액(법인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 상 자산상실비율)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

□ 적용 요령

- '23.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사례

'22.9월 결산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23.1월말까지이므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이 가능하며, 개정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법령 시행시기 조정(법§93⑱)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가상자산 소득 과세 ☐ 시행시기 : '23. 1. 1.	☐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5. 1. 1. ※ 동일 조항에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규정함에 따라 조항 순서조정 (제93조 제17항 → 제18항 이동)

□ 개정 내용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23년→'25년)에 따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일도 유예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⑩ (생략) ⑪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 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 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 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⑪ (생략) ⑫ (현행 제17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 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 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 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 조의3제1항제12호·제13호, 같 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 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 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 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 금융세제 개편 관련 지방소득세 제도개선 》

□ 추진배경

- 현행 금융세제는 다양한 금융상품(주식·채권 등)마다 과세체계가 상이한 한편, 각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및 손실이 통산되지 않음
- ⇒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하여 과세형평 및 합리성 제고

< 개편 前 >		< 개편 後 >	
주식 양도	일부는 양도소득 (대주주, 장외거래 등), 그 외는 비과세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으로 실현(상환·환매·양도·해지 등)되는 모든 소득 ⇒ 금융투자소득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채권 양도	비과세		
펀드 환매·양도 등	배당소득 :		

9 지방소득세 구분 개편 (법 § 87①)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득세의 구분 ○ 종합소득 ○ 퇴직소득 <신 설> ○ 양도소득	☐ 지방소득세의 구분 ○ (좌 동) ○ (좌 동) ○ <u>금융투자소득</u> ○ (좌 동)

□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분류 개편
 - 종합·퇴직·양도소득(3분류) → 종합·퇴직·금융투자·양도소득(4분류)
 - ※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름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u>제94조</u>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 -----. ----- ----- <u>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u> --- ----- ----- ---
1. 종합소득	1.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u>제2호</u>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u>제2호, 제2호의2</u> -- ----- -----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u>2의2. 금융투자소득</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개선 (법 § 89)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원칙)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 (예외) 특별징수분 납세지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좌 동) ○ (좌 동)		
	구분	납세지		구분	납세지
1 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1 호	근로·퇴직소득	근무지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 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 호	연금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3 호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호	그 밖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원칙) 소득 지급지 (예외) 복권·체육진흥 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 : 복권 투표권 판매지	4 호	그 밖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원칙) 소득 지급지 (예외) ①복권·체육진흥 투표권 당첨금·환급금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 : 복권·투표권 판매지 ② 금융투자소득 : 인출제한 계좌의 개설지

□ 개정 내용

- 금융기관이 특별징수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보충규정 신설
 - 금융투자소득의 지급지가 특별징수분 납세지(§89③ 제4호)가 되며,
 - 여러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아 납세지 결정이 곤란한 경우, 고객이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이 적용될 계좌를 지정하였다면 납세지도 해당 계좌 개설지를 기준으로 적용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생략)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u>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u>	③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u>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u>

개정 전	개정 후
<u>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u> <u>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u> <u>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u>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 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 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 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 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20</td></tr> <tr> <td>3억원 초과</td><td>600만원 + (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 </tbody> </tabl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u> <u>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u> <u>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u> <u>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u> <u>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u>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을 계산한다. <u>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u> <u>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②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절차 마련**(법§102의6, §102의7 신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u>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u> ○ <u>(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예정·확정)하는 거주자</u> ※ 금융투자소득세(국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서도 제외 ○ <u>(기간)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간</u> ○ <u>(신고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u> * 다른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효력 인정 ○ <u>(납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한 금액을 납부</u> - <u>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하여 납부</u> - <u>확정신고·납부의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경정세액, 특별징수세액도 공제하여 납부</u>

□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 규정(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에 준함)
 - (신고기간) 금융투자소득세(국세)의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2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지방소득세 예정·확정신고 필요
 - (신고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함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무관할신고를 인정

< (참고) 금융투자소득세(국세) 신고·납부 >

• 예정신고 및 납부

- 금융투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 경우는 예정신고 필요(=원천징수 제외)

대상	기간
①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예: 장외거래 등)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내
②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예: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비상장주식,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	기간
①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예: 소득이 3억원을 초과)	⇒ 다음 해 5월
② 환급세액이 있는 자 (예: A은행에서 소득 + B증권에서 결손)	
③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예: 상반기 결손 + 하반기 결손) ※ 해당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원천징수되었으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또는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대로 납세의무 종결(확정신고 불필요)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 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해당 신고기한에 2개 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 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 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 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③ <u>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u> 1. <u>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u> 2. <u>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u> 3. <u>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u> 4. <u>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u>

③ **결정·경정, 징수·환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 마련**(법§102의8 신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u>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u> ☐ <u>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규정(§96~98, §100)을 준용</u>

□ **개정 내용**

- 납세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과세관청의 **직권결정·경정**, **수시부과**, 세액의 **징수 및 환급**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지방세법」 §96~§98, §100)을 **준용**

※ 제2절(종합·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규정을 두고 제3절(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현행 법체계와의 균형을 고려

< (참고) 준용하는 기존 「지방세법」 규정 >

§96	수정신고	• 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97	결정·경정	• 납세자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세액을 직권으로 결정 또는 경정
§98	수시부과	•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 가능
§100	징수·환급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 가능 •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참고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102조의8(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1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정비

□ 배경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변경

	현행 「소득세법」 §94① (~'24년)	개정 후 「소득세법」 §94① ('25년~)
1호	토지	토지
2호	부동산취득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3호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등	삭 제(금융투자소득으로 이관)
4호	기타자산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5호	파생상품	삭 제(금융투자소득으로 이관)
6호	신탁 이익권	신탁 이익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 제8장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 중 일부 조항 개정 및 이관 필요

① 주식 양도 관련 과세체계 정비(법§103, §103의3, §103의7)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세율) 부동산,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 규정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종합·퇴직· <u>금융투자소득</u> 과 구분하여 계산 ○ (세율) 과세대상 자산별 세율 중 <u>주식 등에 대한 세율 삭제</u>

□ 개정 내용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규정에 지방소득 구분 개편사항(금융투자소득 신설, 3→4분류)을 반영
-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및 관련규정 삭제(주식 관련사항은 신설되는 제2절의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이관)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u>종합소득 및 퇴직소득</u>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 ----- ----- <u>종합소득, 퇴직소득</u> <u>및 금융투자소득</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④ ----- 제118조의9--- ----- ----- --- 제118조의10----- ----- ----- ----- ----- ----- ----- -----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	제103조의3(세율) ①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1. (생략) <u>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u> <u>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u> <u>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u> <u>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u> 14. (생략) ② ~ ⑥ (생략) <u>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	----- -----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개정 전	개정 후
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⑧----- 제118조의9----- ----- ----- -----.
(표 생략)	(표 현행과 같음)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생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 제118조의9----- ----- ----- 제118조의15제2항----- ----- ----- ----- ----- ----- -----.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26조의10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⑦ ----- 제118조의16----- ----- ----- ----- -----

개정 전	개정 후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26조의11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⑨·⑩ (생략)	----- -----. ----- ----- ----- -----. ⑧ ----- ----- 제118조의17- ----- ----- ----- ----- -----. ----- -----. ⑨·⑩ (현행과 같음)

② **기장불성실가산세 삭제**(법§103의2, §103의8)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 국세(양도소득세) 가산세의 10%	☐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 (삭 제)
☐ 세액의 계산 ☐ 총결정세액 계산 시, 다음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① <u>기장불성실가산세</u> ②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③ 「지방세기본법」상의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 세액의 계산 ☐ 총결정세액 계산 시, 다음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개정 내용**

-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 시,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 삭제

※ 총결정세액에 포함되는 가산세를 열거한 세액계산 규정에서도 해당 규정 삭제

< (참고) 국세 개정사항 >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위반시 누락된 산출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기장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방소득세에도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양도 기록의무 및 의무위반에 따른 기장불성실가산세 규정 삭제(「소득세법」 개정사항)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 제103조의9제2항 ----- ----- ----- ----- ----- ---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u>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 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 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 른 가산세만 적용한다.</u>	

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법 § 103의1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금융·보험업 제외)로서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신 설> <신 설>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좌 동) ○ (좌 동) - <u>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의 반기(半期) 중 계좌가 해지된 경우 :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u> ○ <u>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특례</u> - <u>특별징수기간(=반기) 동안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u> - <u>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u>

□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 마련

- (개요) 기존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 특별징수의무자 :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국세 원천징수의무자)
- (징수기간) 과세기간의 반기(半期)를 기준으로 특별징수
- (인출제한) 향후 특별징수 예정인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중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한시적으로 제한
- (징수배제) 납세자가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배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배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참고) 금융투자소득세(국세) 원천징수제도 개요 >

원천징수 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
기간	과세기간(1.1.~12.31.)의 반기(半期) - 반기 동안의 손익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기간을 두지 않고 이익 발생 즉시 원천징수할 경우, 과세기간 중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이 필요하여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의 부담이 급증
징수대상	원천징수기간 중 자사 고객에게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 - 1인이 특정 금융회사의 계좌를 다수 보유한 경우, 모든 계좌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 원천징수기간(반기) 중에는 징수예정인 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한시적으로 제한 ※ 인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계좌보유자가 징수일 전에 전액 인출할 경우 징수일에는 잔고 부족으로 징수 불가능 우려
예외	① 계좌보유자(납세자)의 원천징수 배제 신청 ※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②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제외 통지 ※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비상장주식 입고, 상속·증여 등)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납세자가 신고·납부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u>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u> ③ <u>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u> ④ <u>「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u>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14 국세 과세정보 공유범위 확대(법 § 103의59)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 ○ 신고자료 - (원칙) 신고 익월 15일 - (예외) <table><tr><td>전자신고</td><td>종합·퇴직·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td><td>신고 즉시</td></tr><tr><td>확정신고</td><td>종합·퇴직·양도소득</td><td>신고월(月)</td></tr><tr><td>예정신고</td><td>매매차익, 양도소득</td><td>+2개월</td></tr><tr><td>수정신고</td><td></td><td>신고월(月) +3개월</td></tr></table> ○ 환급자료 : 환급 익월 15일 - 종합·퇴직·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자료 : 신고월(月) + 2개월	전자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신고 즉시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신고월(月)	예정신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2개월	수정신고		신고월(月) +3개월	□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한 ○ 신고자료 - (원칙) 신고 익월 15일 - (예외) <table><tr><td>전자신고</td><td>종합·퇴직·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td><td>신고 즉시</td></tr><tr><td>확정신고</td><td>종합·퇴직·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td><td>신고월(月)</td></tr><tr><td>예정신고</td><td>매매차익, 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td><td>+2개월</td></tr><tr><td>수정신고</td><td></td><td>신고월(月) +3개월</td></tr></table> ○ 환급자료 : 환급 익월 15일 - 종합·퇴직·양도소득 및 <u>금융투자소득</u>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자료 : 신고월(月) + 2개월	전자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신고 즉시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신고월(月)	예정신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2개월	수정신고		신고월(月) +3개월
전자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신고 즉시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신고월(月)																							
예정신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2개월																							
수정신고		신고월(月) +3개월																							
전자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신고 즉시																							
확정신고	종합·퇴직·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신고월(月)																							
예정신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u>금융투자소득</u>	+2개월																							
수정신고		신고월(月) +3개월																							

□ 개정 내용

- 국세청으로부터 지자체로 통보되는 과세자료 범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추가(예정·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 관련 자료)

※ 결정·경정 및 원천징수 관련 과세자료는 현행 규정으로도 자동 반영되어 개정 불요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 ----- ----- ----- ----- -----.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1. ----- ----- ----- ----- ----- -. ----- ----- -----.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가. ----- ----- ----- -----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개정 전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 ----- -----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u>제74조</u>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u>매매차익예정신고</u>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나. ----- -- <u>제74조, 제87조의23</u> ---- ----- ----- <u>매매</u> <u>차익예정신고</u> , 같은 법 제87 <u>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u> <u>예정신고</u> ----- -----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u>제74조</u>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 ----- ----- ----- ----- ----- <u>제74조, 제87</u> <u>조의23</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기준 ○ 인출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계좌(인출제한계좌)가, * 금융기관이 특별징수세액 확보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중 세액 상당액에 한하여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 - 1개인 경우 : 해당 인출제한계좌의 개설지 - 2개 이상인 경우 : 징수일 기준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계좌*의 개설지 *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출제한계좌 중 가장 최근에 개설된 계좌

□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분 특별징수세액 납세지 기준 구체화

-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특별징수일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계좌**의 개설지 관할 지자체를 납세지로 결정

* (예시) 1개의 인출제한계좌만으로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인출제한계좌를 추가하는 경우, 특정하지 않고 계좌보유자의 모든 계좌를 인출제한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설된 인출제한계좌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생략)	제87조(납세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를 말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 별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을 제 한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 제한계좌”라 한다)가 1개인 경 우: 해당 인출제한계좌 2.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 우: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 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인출 제한계좌. 다만,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 근에 개설한 인출제한계좌로 한 다.

2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영 § 90③, § 92③ 등)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방법 규정 신설 ☐ (시행령) 분할납부할 금액 규정 ☐ (시행규칙)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서식 수정

□ 개정 내용

- (시행령) 종합(퇴직)소득 및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 분할납부할 금액을 규정

- (시행규칙) 분할납부 신청을 위한 서식*(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6서식) 개선

*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 등

□ 적용 요령

- '23.1.1.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 제외), 종합·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 제외)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7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u>법 제93조제7항</u> 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u>법 제93조제7항 전단</u> ----- ----- ----- -----.
<u><신 설></u>	③ <u>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u> 2. <u>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u>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u>법 제93조제9항</u> 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 <u>소득세법</u> 시행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 ----- ----- 「 <u>소득세법</u> 시행

령」 제128조를 따른다.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② (생략)

<신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령」 제128조 및 제129조-----
-----.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④ 법 제95조제5항-----

-----.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①·② (생략) ③ <u>법 제95조제4항</u> 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95조제5항</u>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2021. 4. 29.>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 부 지 연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납부(환급)할 총세액(⑪+⑮-⑯)		⑰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⑱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⑰-⑱)		⑲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⑤ 납세지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는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출국 시에는 사망일·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⑮ 분납할 세액란: ⑰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세 율 표

세 율 구 분	토지·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0.6-4.5%	7%	1.6-5.5%	4%	1.6-5.5%	5%	1.6-5.5%	2.6-6.5%	4%	2.6-6.5%	5%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 율 구 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	1.6-5.5%	1.6-5.5%	4%	1.6-5.5%	2.6-6.5%	4%	2.6-6.5%	2.6-6.5%	4%	2.6-6.5%	5%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 율 구 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	2.6~ 6.5%	7%	2.6~ 6.5%	6%	2.6~ 6.5%	7%	3.6~ 7.5%	6%	3.6~ 7.5%	7%	3.6~ 7.5%	3.6~ 7.5%	6%	3.6~ 7.5%	7%	3.6~ 7.5%	6%	7%	6%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⑪자기조정 ⑫외부조정 ⑬성실신고확인 ⑭간편장부 ⑮추계 - 기준율 ⑯추계 - 단순율 ⑰분리과세 ⑱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⑩정기신고 ⑪수정신고 ⑫경정청구 ⑬기한후신고 ⑭추가신고(인정상여)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③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⑯ 전화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세	출	세
산	액	감
세	액	공
세	액	제
결	정	합
세	액	분리과세
합	계	(22+23)
가	산	세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계(25+26+27)		
추	가	납
부	세	액
합	계	(24+28+29)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32-33)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4, 12, 11, 20, 31, 32, 40, 35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⑫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⑬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㉑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㉒ 세액감면란·㉓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㉔·㉕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㉖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㉘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㉙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㉚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㉛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㉜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㉞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㉝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㉞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㉝ 합계 금액에서 ㉝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㉚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㉟ 분납할 세액란: ㉞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과세표준	2017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세지							
⑤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⑪ 수정신고	⑫ 경정청구	⑬ 기한후신고	⑭ 전화번호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③ 세무대리인		⑨ 성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전화번호	
④ 퇴직소득명세	⑫ 지급처명		⑬ 입사일	⑭ 지급일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
	⑫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사일	⑯ 근속월수			
합 계							
⑤ 근속연수계산		⑮ 제외월수	⑯ 가산월수	⑰ 중복월수	⑱ 정산근속 연수	⑳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㉑ 2013.1.1.이후 근속연수(㉒-㉓)

⑥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㉗	
	환산산출세액(㉗× 세율)		㉘	
	산출세액(㉘× 정산근속연수/12배)		㉙	
	세액공제		㉚	
	가산세	무(과소)신고	㉔	
		납부(환급)지연	㉕	
		합계(㉔+㉕)	㉖	
	기납부 세액		㉗	
납부(환급)할 총세액(㉙-㉚+㉖-㉗)		㉘		
분납할 세액(2개월 내)		㉙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㉘-㉙)		㉚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㉗			
	환산산출세액(㉗× 세율)		㉘			
	산출세액(㉘× 정산근속연수/12)		㉙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㉚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㉚×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㉛			
	연평균과세표준(㉛/각근속연수)		㉜			
	환산과세표준(㉜× 5)		㉝			
	환산산출세액(㉝× 세율)		㉞			
	연평균산출세액(2012.12.31.이전: ㉞× 세율, 2013.1.1.이후: ㉞/5)		㉟			
	산출세액(㉟× 각 근속연수)		㊱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㉔× 퇴직연도별 비율) + [㉖× (100%-퇴직연도별 비율)]		㉘	
	세액공제		㉙	
	가산세	무(과소)신고	㉚	
		납부(환급)지연	㉛	
		합계(㉚+㉛)	㉜	
	기납부 세액		㉝	
납부(환급)할 총세액(㉘-㉙+㉜-㉝)		㉞		
분납할 세액(2개월 내)		㉟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㉞-㉟)		㊱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 ④ 납세지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㉒ 환급금 계좌신고(㉗·㉘)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㉙ 세무대리인(㉚~㉜)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㉞ 퇴직소득명세(㉟~㊱)란: ㉟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
- ㊲ 근속연수계산(㊳~㊵)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 ㊶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㊶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㉓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 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㉓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㉕ 환산산출세액란: ㉗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㉖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 ㉗ 환산과세표준과 ㉘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 ㉙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㉚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㉘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㉚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㉙ \times \text{퇴직연도별 비율}) + [㉖ \times (100\% - \text{퇴직연도별 비율})]$ 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㉜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 ㉓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란: ㉔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㉕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㉖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㉗ **납부(환급)할 총세액**: ㉓ 산출세액에 ㉔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㉕ 가산세를 합한 뒤 ㉖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 ㉘ **분납할 세액**란: ㉗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칸에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귀속년도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 (영§99의2~§99의4, 규칙§44의2·§44의3, §45~§47 등)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일반적인 경우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times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C : 세율 ○ 2회 이상 신고하는 경우(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D : 세율 E : 이미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세액 납부절차 규정
 - 종합·퇴직·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에 준하여, 예정(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식 마련

-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개인지방소득세율(2~2.5%)을 곱하여 계산
- 단,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 계산식 규정

<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식 비교 >

일반적인 경우	$\left(\overset{\text{㉠}}{\text{금융투자소득금액}} - \overset{\text{㉢}}{\text{기본공제 금액}} \right) \times \overset{\text{㉡}}{\text{세율}}$
2회 이상 신고하는 경우	$\left[\left(\overset{\text{㉠-1}}{\text{이미 신고한 소득금액}} + \overset{\text{㉠-2}}{\text{2회 이후 신고하는 소득금액}} - \overset{\text{㉢}}{\text{기본공제 금액}} \right) \times \overset{\text{㉡}}{\text{세율}} \right] - \overset{\text{㉣}}{\text{이미 신고한 소득분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u>
<u><신 설></u>	<u>제99조의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 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세액을 말한다.</u>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 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 액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1 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 본공제금액(같은 영 제203조의2제5항 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 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C: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u>

기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 금액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8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같은 영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D: 법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신 설>

제99조의3(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신 설>

제99조의4(확정신고·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
야 한다.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납부계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말한다)

2.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②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0조의28(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times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C : 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D : 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50조의29(예정신고납부) 법 제87조의22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세율에 대한 세부 규정 ○ 파생상품 : 1% ☐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 적용 순서 및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 ②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 ③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	☐ 세율에 대한 세부 규정 <삭 제> ☐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 적용 순서 및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u>신탁 수익권</u> 을 2회 이상 양도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 내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규정 삭제

※ 금융세제 개편으로 파생상품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체계(소득분류)가 변경(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위임의 근거가 되는 모법규정(법 §103의3⑦)도 삭제

○ 과세연도 중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하여 기본공제 적용 순서 및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

※ 국세 개정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신탁 수익권이 포함됨에 따라 개정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세율) ① 삭 제 ② ~ ⑧ (생 략) ⑨ ~ ⑪ 삭 제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 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과생상 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 로 한다. ⑬ ~ ⑯ (생 략)	제100조(세율)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 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 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 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 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4. (생 략) ③·④ (생 략)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 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 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 ----- ----- ----- ----- 3.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다.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

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2) (생략)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⑤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 (방식)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 * 소득자에게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우선 환급하고, 납부할 특별징수세액에서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 ○ (대상) ①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액 ②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오납금 ③ 연금수령하는 퇴직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금액 * 연금계좌에서 인출(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않음(과세이연)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 (현행과 같음) ○ (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투자소득 특별징수세액 정산분* * (상·하반기 특별징수세액 합계액) -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 × 특별징수세율)

□ 개정 내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세부규정 마련

- (환급대상) 상·하반기 특별징수세액 중 연간 특별징수세액 초과분
- (환급방식) 연말정산 등과 동일하게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

* 소득자에게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금을 지급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납부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납부

□ 적용 요령

○ '25.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103조의13제6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해야 한다.</u>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보유 계좌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
2. 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3.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제203조의3(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상반기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제20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제201조를 준용하여 환급해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6

재해손실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영§100의39, 100의40 규칙§48의4·§48의18 등)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신설 ☐ (시행령) 차감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 범위, 차감신청 방법 및 기한 등 규정 ☐ (시행규칙) 차감세액 계산방법 및 차감신청서식 마련

□ 개정 내용

- (시행령) 차감대상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범위에 가산세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고, 차감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을 규정하며, 차감세액 확정 전까지 기한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시행규칙) 차감세액 계산방법 규정 및 차감 신청서식 마련 등

□ 적용 요령

- '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법령 시행일 이전 납부 건('23.1~2월)에 대해서는 경정 신청접수 후 환급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u><신 설></u>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 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 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경

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

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

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

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

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

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

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략)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⑤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신청 등) ①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을 말한다.</u>
	<u>② 법 제103조의6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u>
	법 법 제103조의30(「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세액 공제 · 감면액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자산상실비율 (법인세액 + 가산세액 - 공제 · 감면액)× 자산상실비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43호의14서식 신설 등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4서식] <신 설>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본 점 소 재 지				
	② 법 인 명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 표 자 성 명				
신 청 내 용					
⑤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월)	
⑥ 차 감 세 액		법인지방소득세			
⑦ 자 산 상 실 의 원인발생연월일(재해내용)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 상 실 비 율		$\%(100 \times \frac{\text{⑨}}{\text{⑧}})$			
⑪ 감면신청이유					

「지방세법」 제103조의6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3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차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청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및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제세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⑥차감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65 제1항 각 호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39 및 시행규칙 제48조의18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법인지방소득세 차감세액 계산식

$$\left(\begin{array}{l} \text{법 제103조의21에} \\ \text{따른 법인지방소득세} \\ \text{산출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법 제103조의30(「법인세법」제75조의3에} \\ \text{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과} \\ \text{「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 \text{따른 가산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세액공제·} \\ \text{감면액}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text{법인세법 제58조에} \\ \text{따른 자산상실비율} \end{array}$$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㉑를 적습니다.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무기장가산세(「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㉒의 무기장 가산세)

2.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상실비율: 「법인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위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⑧ 상실 전의 자산가액, ⑨ 상실된 자산가액, ⑩상실비율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3.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기업		⑯외 부 감 사 대 상	
		일반기업		1. 외부 2. 자기	
		상호출자제한기업		1. 여 2. 부	
		그외기업		1. 정기신고	
		당기순이익과세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법인		11		71	
상장법인		21		72	
코스닥상장법인		30		73	
기타법인		60		74	
비영리법인		81		82	
		83		84	
		91		92	
		93		94	
		50			
⑰신고구분		1. 신청일		2. 연장기한	
⑱결산확정일		⑲납부일			
⑳신고일		㉑연장기한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㉓주식변동		1		2	
㉔사업연도의제		1		2	
㉕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㉖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㉘수입금액				
㉙과세표준				
㉚표준산출세액				
㉛충부담세액				
㉜기납부세액				
㉝차감납부할세액				

□ 안분율의 계산

㉞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㉞특·광역시·주·시·읍·면·자치단체	1. 여	2. 부
㉟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㊱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계	건축물 연면적 (㎡)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③⑨납세지별 산출세액						④①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④①납세지별 가산세액						④②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④③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 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④④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④⑤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④⑥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산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㉞금융기관명	㉞계좌번호	㉞예금주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서류 (본점 신고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⑩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⑪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 ⑫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⑬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⑭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⑮ 결손금누계액 환급신청: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⑯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 ⑱ 수입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⑲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⑩란, ⑪란, ⑫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⑳ 표준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⑫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⑬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㉑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⑫란, ⑬란 및 ⑭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⑬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㉒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⑫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⑬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㉓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⑬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⑬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㉔ 본점/지점여부: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 표시를 하며, ㉕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㉖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㉗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류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탐단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㉘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㉙ 납세지별 산출세액: ㉚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㉛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㉚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 ㉛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㉜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㉝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㉞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⑬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㉝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 ㉞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을 적습니다.
- ㉟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 ㊱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㉚ 납세지별 산출세액 - ㉜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㉛ 납세지별 가산세액 + ㉜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㉝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㉞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㉟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㊲ 금융기관명 ~ ㊳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1. 과세표준계산	108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109	이월결손금						
	110	비과세소득						
	111	소득공제						
	112	법인세과세표준 (108 - 109 - 110 - 111)						
	113	선박표준이익						
2. 산출세액계산	115	외국법인세액조정액						
	116	법인세과세표준 (112 + 113 + 115)						
	117	외국법인세액						
	118	과세표준(116 - 117)						
	119	세율						
	120	산출세액						
	121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22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3. 납부할 세액계산	123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24	합계(120 + 122)						
	125	산출세액(120 = 121)						
	126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27	차감세액						
	128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29	가산세액						
	130	가감계(125 - 126 - 128 + 129)						
	기납부세액	131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132	수시부과세액					
		133	특별징수납부세액					
		134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135	소계 (131 + 132 + 133 + 134)					
	기납부세액	13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137		합계(135 + 136)						
138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139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140		차감납부할세액 (137 - 138 ± 139 + 141)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 득세 계산	141	과세표준						
	142	세율						
	143	산출세액						
	144	감면세액						
	145	차감세액(143 - 144)						
5. 미 환 류 소 득 법 인 지 방 소 득 세	146	공제세액						
	147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가산세 제외)						
	148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149	가감계(143 + 145 + 148)						
	150	기납부과세액						
6. 세 액 계	151	기납부세액 (146 + 147)						
	152	차감납부할세액 (149 - 151)						
	153	해당연도차감 납부할세액계 (140 + 149 + 152)						
	154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155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153 + 154)						

작성 방법

1. 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⑪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⑫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⑬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⑭ 외국법인세액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세율란(⑮, ⑯, ⑰):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⑱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⑱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⑲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⑲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⑳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㉑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㉒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㉓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㉔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㉕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㉖, ㉗, ㉘)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㉙, ㉚, ㉛)란: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㉜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㉝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㉝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㉞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란: ㉞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㉕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⑨준비금손금산입액					
	⑩기부금손금산입액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⑫각사업연도소득금액(⑧-⑨-⑩-⑪)					
	⑬비과세소득					
	⑭과세표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율					
	⑯표준산출세액					
	⑰가산세액					
	⑱가감계(⑯+⑰)					
	기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세액				
		⑳()세액				
		㉑계(⑲+⑳)				
㉒차감납부할세액(⑱-㉑)						
㉓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㉔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㉕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㉖안분율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㉗납세지별 산출세액				㉘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㉙납세지별 가산세액				㉚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 신고	납부지연	기타	㉛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㉜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㉝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㉞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㉟금융기관명				
계좌		㊱예금주				
계좌		㊲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⑭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⑮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⑭과세표준에 ⑮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⑰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㉓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 표시를 하며, ㉔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㉕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7. ㉖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㉗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에 ㉖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㉘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10. ㉙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㉚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㉗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㉙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㉛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㉜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을 적습니다.
14. ㉝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15. ㉞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㉗납세지별 산출세액 - ㉘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㉙납세지별 가산세액 + ㉚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㉛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㉜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㉝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㉞금융기관명 ~ ㉞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7.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 결 모 법 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 당 사 업 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외부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여[]부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⑱ 연결수입금액	()			
⑲ (연결) 과세표준				
⑳ 연결산출세액				
㉑ 총부담세액				
㉒ 기납부세액				
㉓ 차감납부할세액				

[illegible][illegible]

환금 계좌	26 금융기관명	27 예금주	28 계좌번호
----------	----------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⑥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④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⑤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③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③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③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㉑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⑩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㉒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㉓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④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㉒기납부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㉒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㉓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㉓차감납부할세액란: ㉑총부담세액에서 ㉒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㉔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조·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탄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㉕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㉔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frac{\text{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text{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㉖금융기관명 ~ ㉘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2. 3. 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⑧업태	⑨종목	⑩계산구분 [] 확정 [] 중간
⑪해산등기일	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직전 사업연도	⑭의제 사업연도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
⑮과세표준				
⑯세율				
⑰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계산

⑮ 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⑲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⑳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㉑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㉒납세지별 산출세액				㉓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㉔납세지별 가산세액				㉕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㉖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㉗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㉘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음
------	-------------------	-----------

신 고 안 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⑮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⑰표준산출세액: ⑮과세표준에 ⑮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⑱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표시를 하며, ⑲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㉔해당사업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㉔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7. ㉔납세지별 산출세액: "⑰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㉔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㉔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9. ㉔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㉔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㉔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을 적습니다.
12. ㉔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13. ㉔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㉔납세지별 산출세액 - ㉔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㉔납세지별 가산세액 + ㉔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㉔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㉔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법인명(조합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화번호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⑦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⑧자기자본총액	
⑨과세표준(⑦-⑧)	
⑩세율	
⑪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계산

⑫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⑬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⑭해당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⑮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⑰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⑳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㉑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㉒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음
------	----------------	-----------

신고안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1. ①법인명(조합명) ~ ⑨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⑩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⑪ 표준산출세액: ⑨과세표준에 ⑩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⑫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 표시를 하며, ⑬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⑭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 합니다.
6. ⑮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탐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7.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⑪표준산출세액 × ⑮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⑰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9.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⑩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⑳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세액을 적습니다.
12. ㉑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text{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표준세율} \times \text{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 \right)$$

13. ㉒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 ⑰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㉑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㉒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삭제<2008. 2. 22.>

⑤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로 한다.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left(\begin{array}{c} \text{법 제55조에} \\ \text{따른} \\ \text{산출세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법 제75조의3과} \\ \text{「국세기본법」 제47} \\ \text{조의2부터} \\ \text{제47조의5까지에 따} \\ \text{른 가산세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다른 법률에 따른} \\ \text{공제 및 감면세액} \end{array} \right) \times \frac{\begin{array}{c} \text{재해로 인하여} \\ \text{상실된 자산의 가액} \end{array}}{\begin{array}{c} \text{상실전 자산총액} \end{array}}$$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text{재해상실비율} = \frac{\text{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text{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text{최초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VII 재산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조정(법 § 110①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 주택 : 40%~80% ☐ <단서 신설>	☐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조정 ☐ (좌 동) ☐ 1세대 1주택 : 30%~70%

☐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를 하향(40~80%→30~70%) 조정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u>80까지</u> <단서 신설>	2. ----- ----- <u>80까지</u> .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 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 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 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2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 제도 신설(법 § 110③, § 12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 제도 신설 ☐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 시스템 반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24.1.1. 시행 예정

□ 개정내용

-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설정하여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가 제한적으로 증가토록 하여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

< 과표 상한 계산식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現 과표산정방식)

** 0~5% 범위에서 정하되, 소비자물가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최종 적용할 과세표준은 과표 상한과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중 작은 값

-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는 5년간 유지('24년~'28년) 후 폐지

□ 적용요령

- '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u>80까지</u> <단서 신설>	2. -----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illegible]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
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	개정 후
<u>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u>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 <u>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 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 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 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 는 금액</u>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u>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 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u>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u>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개정 전	개정 후
<u>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u>	

3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법 § 11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 4%	☐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 ☐ 삭제

☐ 개정내용

- 별장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 세율 적용

※ 별장 개념(법§13⑤1) 삭제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택	3. ----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0	<삭제>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4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법 § 118조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에 대해 납부를 유예

□ 개정내용

- 일정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

* < 납부유예 요건 >

-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 취소

* < 납부유예 취소 사유 >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⑤ 납기 전 징수(지방세징수법 §22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 납세자는 납부유예 종료시에 종료시점까지의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u>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일 것</u> <u>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u> <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u> <u>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u>

개정 전	개정 후
	<u>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u> <u>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u> <u>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u> <u>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개정 전	개정 후
	<u>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u> <u>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u> <u>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u>5.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u>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u> <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개정 전	개정 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분리과세 적용 요건 ☐ '89.12.31이전부터 소유 ('90.1.1.이후 상속,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 ☐ <신 설>	☐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분리과세 적용 요건 추가 ☐ (좌 동) ☐ '90.1.1.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

☐ 개정내용

- '90.1.1. 이후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적용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제10522호, 2012.3.2.시행)부칙 제6조 >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④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 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적용요령

- '23.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⑧ (생 략) ⑨ 제1항제2호라목·바목 및 제2항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u>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u>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⑩ ~ ⑫ (생 략)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⑩ ~ ⑫ (현행과 같음)

2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영 §109)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세전문기관의 조사연구 의뢰 근거를 신설

☐ 적용요령

- 시행한 날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생 략) <신 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재산세 1세대 1주택 서울특례 적용대상 확대 (영 § 110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 상속주택 ○ <신 설>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확대 ○ (좌 동) ○ 상속주택 범위 확대*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향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 문화재 주택 또는 상속주택 1개만 소유한 경우 ○ 혼인 전 소유 주택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주택	□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명확화 ○ 문화재 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도 추가* *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선택 ○ 부령은 삭제하고 1주택 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 *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선택
□ 별도의 세대로 보는 범위 ○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 별도의 세대로 보는 범위 확대 ○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 *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 봉양 대상 확대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확대(영§110의2①) >

□ 개정내용

① 상속주택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 (종부세)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 중

②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 (종부세)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중

□ 적용요령

- 시행령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명확화(영§110의2②) >

□ 개정내용

① 문화재 주택 또는 상속 주택

- 문화재 주택 또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만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큰 1개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율 특례 적용

*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

②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 전 소유주택에 대해서도 시가표준액이 가장 큰 1개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율 특례 적용

*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

□ 적용요령

- 시행령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별도 세대로 보는 범위 확대 (영§110의2③) >

☐ 개정내용

-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 동거봉양 대상을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하여, 조부모 동거봉양 시에도 별도 세대 적용

☐ 적용요령

- 시행령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u>주택</u>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8. ----- <u>주택</u>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개정 전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u>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u> <u><신 설></u> <u><신 설></u>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단서 신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	<u>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u> ② ----- ----- ----- -. 1. ----- ----- <u>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u> <u>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u> <u>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u> 2. ----- ----- <u>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u> ③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u>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u> 2. (생략) ④·⑤ (생략)	----- ----- -----. 1. <u>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u>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토지 세부담상한 적용 특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 종전 주택에 과세된 세액의 130%를 세부담상한 적용 ※ 토지 세부담상한율 150% 미적용	☐ 토지 세부담상한 적용 특례 대상 추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정비사업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법 (2018.2.9.시행)

☐ 개정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

* 종전 주택에 과세된 세액의 130%

☐ 적용요령

- 시행령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 ----- ----- ----- ----- ----- ----- ----- -----.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 다. (생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 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 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 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 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 ----- -----

개정 전	개정 후
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text{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times (130/100)^n$ $n = (\text{과세 연도} - \text{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2. ~ 4. (생략)	----- ----- ----- ----- ----- ----- 2. ~ 4. (현행과 같음)